



# 월간 협회소식

— 본지는 지난 한달동안 협회의 주요업무를 요약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

대한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4동 297-7번지  
TEL:751-6601, FAX:742-7018  
협회E-mail은 하루 두 번 이상 열어 보시다.

## 신년사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2008년 무자년(戊子年)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우리협회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년에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해 우리지역 건설업계는 공사물량부족과 부동산경기 침체로 어느 해 보다 어려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이에 우리협회에서는 공사물량확대와 지역업체의 수주비증확대를 위해 대구광역시, 시의회, 국회의원, 정부등을 상대로 간담회, 토론회등을 수시로 개최하여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혁신도시건설에 지역업체 참여를 위해 우리시회가 앞장서 노력한 결과 정부의 지방건설업육성대책을 이끌어 내어 혁신도시공사의 지역제한기준 100억원으로 상향과 1공구 공사의 지역의무공동도급 발주, 주거정비사업에 지역업체의 참여확대를 위해 용적율 인센티브 15%로의 상향추진 완료, 대구시가 발주하는 대부분의 공사를 지역제한 또는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지역업체가 참여하도록 추진한 결과 공공공사 발주물량은 정체되었음에도 대구시 발주공사에 대한 지역업체의 수주비중은 2배이상 증가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회원여러분

2008년도에도 우리협회는 지속적으로 공사물량확대와 지역공사에 대한 지역업체의 주도적 참여에 역점을 두고 협회의 역량을 집중할 생각입니다.

우선 금년에는 공사발주가 지난해 보다 대폭 증가하여 수주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12월 대구시와 한국철도공단이 체결한 경부고속철 주변 정비공사 위수탁협약에 따라 약 2,000억원대의 정비공사가 순차적으로 지역제한등으로 발주될 예정이며, 동대구 역세권개발 본격 착수, 테크노폴리스 조성에 따른 도로공사, 혁신도시건설 부지조성 공사와 부대시설 공사등 크고 작은 공사의 발주가 예정되어 있으며 여기에 지역업체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한다면 지역건설업도 지난 10년간의 침체에서 벗어나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함께 지금 우리 대구는 새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될 대형 프로젝트인 경부대운하, 국가산업단지 지정, 경제자유구역 건설등으로 어느 때 보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로 부풀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금년에는 희망을 가지고 협회를 중심으로 힘차게 달려 봅시다.

새해에도 회원 여러분의 사업이 더욱 번창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戊子年 元旦

大韓建設協會 大邱廣城市 會長 李 弘 中

## 우리시회 2007년도 우수시도회로 선정 표창수상



우리시회는 전국 16개 시도회를 대상으로 한 본회 정기감사와 본회 각 부서의 종합평가 결과 「2007년도 우수시도회」로 선정되어 지난 12. 28 본회 총무식에서 표창을 수상하였다.

우리시회는 전국 시도회중 가장 적은 4명의 직원으로도 지난해 동안 각종 제도개선 건의실적, 간담회등 각종회의 개최실적, 업무수행능력, 회원사 애로사항 해소 및 수주영역 확대를 위한 노력, 회계투명성등에서 골고루 가장 좋은 점수를 기록하였으며 협회소식지 발간배포, 장학금수여등이 수범사례로 인정받아 최우수 시도회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 건설업 신규등록, 주기적신고등 금년부터 우리협회에 위탁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건설업관리지침 개정시행으로 금년 1. 1부터 건설업신규등록등의 업무가 우리협회에 위탁됨에 따라 앞으로는 우리시회에 신청서등을 신고, 접수하여야 한다.

### ■ 우리협회가 수행할 위탁업무의 내용

- 건설업등록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심사)
- 건설업등록기준 주기적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심사)
- 건설업 기재사항 변경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심사) 후 등록증·등록수첩에 변경기재 포함
  - ※ 소재지 변경의 경우 전출지 사도회에 신고
- 건설업의 양도·법인합병 및 상속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 ※ 위탁업무 중 「건교부장관의 지시에 따른 등록기준 실태조사」 업무는 향후 본회에서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건교부장관 지시를 받아 실시

### ■ 신청내용의 심사 및 처리

- 접수 및 심사결과는 심사결과통보서 서식에 따라 관할 사도청에 통보된 기재사항 변경신청의 경우에는 최종 처리결과를 통보
  - ※ 심사권한은 협회에 있으며, 사도청은 협회가 통보한 심사결과(적합, 부적합)에 따라 수리 여부 결정
- 업무처리의 전 과정에서 회원사와 비회원사간 차별 없이 공정·정정하게 처리하여 불필요한 오해 내지 민원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
  - ※ 동 위탁업무는 감사원 및 건교부 등 정부기관의 감사 대상임
- 등록기준증 ‘사무실’ 요건은 현지방문·확인을 원칙으로 함

## 2007년도 실적신고 강습회 개최



내달 2.1부터 접수하는 건설공사 실적신고의 차질없는 준비를 위하여 우리사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2007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 강습회」를 개최하였다.

■ 일 시 : 2007. 12. 18(화) 14:00 ~ 17:00

■ 장 소 : 신라비페 신관 3층

■ 참석자 : 회원사 162개사 157명

### ■ 강습회 진행내용

#### ◆ 사무처장 인사말(14:00~14:10)

#### ◆ 실적신고요령 및 유의사항 설명(14:10~16:20)

- 최근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 동향 및 2008년초 협회가 수행하는 위탁업무 설명
- 회원사 불이익 방지를 위해 실적신고시 기성실적, 자본금, 기술자등 등록기준 충족 여부 점검하여 신고토록 당부
- 실적신고 기재방법 및 유의사항 설명
  - 공사실적, 재무제표, 자기공사, 통계조사표 기재요령
  - 상호협력평가 신청요령등

#### ◆ 박경로 고문변호사 특별교육(16:20~17:00)

- 기존 협회소식지 '법률코너'에 게재된 건설관련 중요 판례 설명

### ■ 주요 질의 및 응답내용

- 4대보험료 사후 정산된 경우 신고 기준금액은?
  - 정산후의 증감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액, 기성액 신고하여야 함
- 소규모 전문공사를 신고하더라도 경미한 공사로 인정되므로 영업범위위반으로 처벌받지 않는 것 아닌지?
  - 건설업자는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영업범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실적신고시 특히 주의

##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기탁

- 성금액 : 삼백만원 ₩3,000,000
- 기탁처 : TBC
- 방송일 : 2007. 12. 20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시행

건교부는 건설업생산체계 개편, 하도급관리체계 강화, 부실업체 퇴출 실효성확보를 위한 건설업등록업무 협회위탁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금년 1.1부터 시행하고 있다.

### 【주요 개정내용】

- 일반·전문간 겸업 허용에 따른 상호실적인정기준 마련
  - 일반 → 전문 : 전문건설업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한 실적으로 금액제한 없이 전환가능
  - 전문 → 일반 : '05~'07년까지 전환가능한 실적을 매년 보유한 업체의 실적중 최대 60억원까지 전환가능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의무가입대상 확대
  - 공공공사, 민간투자사업 10억원 이상 → 5억원 이상
  - 공동주택 300호이상 → 200호 이상 공동주택·주상복합건물 등
- 하도급계획서 제출의무 신설
  - 제출대상공사 :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 ※ 장기계속공사는 연차별 계약서 작성제출
- 예외적 재하도급 허용
  - 특허공법 또는 신기술 적용공사는 30% 이내
  - 철강재설치공사업자가 강구조물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자가 돌붙임, 유리, 방수, 철물공사 하도급 경우는 20%이내
- 자기공사인 경우에는 건설업자만이 시공하여야 하는 시공자 제한 대상공사 확대
  - 보육원, 유치원, 특수교육기관, 평생교육시설 추가
  - 골프장, 스키장, 자동차경주장,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물 구축적 명시
- 행정절차간소화
  - 1건공사 도급금액 4천만원 미만 + 공사기간 30일 이내 공사는 직접시공계획 통보제외
  - Kicon 또는 감리자에게 직접시공계획 및 하도급통보한 경우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간주
- 부대공사범위 확대
  - 1개 전문공종이 전체공사의 50% 이상인 복합공사 2억미만 → 3억미만
  - ※ '04년 의무하도급 폐지시 일반·전문간 합의사항
- 건설업등록, 주기적신고, 실태조사 등 정부권한을 건설협회에 위탁
  - 건설업 등록신청 등 접수 및 신청내용심사, 기재사항변경신청의 접수 및 처리, 실적신고 내용의 확인, 등록기준 적합여부 실태조사 등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효성 강화
  - 건설공제조합에의 예치기준, 융자금액, 기간 등에 대한 건교부장관 승인필요 (ex, 토목기준 : 예치금 1.6억~3억/대출한도축소 80%~60%/대출기간제한 1년~2년)

## 2008년도 적용 노동관련 고시내용

구분	고시부문	고시내용			비고	
		2008년도	2007년도	변동내용		
산재 보험	건설업 산재보험요율	36/1,000	38/1,000	오율 인하 (△2/1,000)	보험료 징수법 §14③	
	건설공사 노무비율	노무 비율	(좌 동)	-	보험료 징수법 §17①	
		하도급 노무 비율	총공사금액의 28% (개선)	(좌 동)		-
고용 보험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	○ 월일용근로자수(연인원) 100-200인 : 300,000원(월) 200-400인 : 500,000원(월) 400-700인 : 700,000원(월) 700인이상 : 900,000원(월) ○ 전자카드 신고실적 200-400인 : 300,000원(월) 400-700인 : 500,000원(월) 700인이상 : 700,000원(월)	(좌 동)	-	고용법 §18조의2	
	건설업 월평균임금	2,496,330 원	2,311,955 원	184,375 원 증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2①	
최저 임금	최저임금액 ※ 적용기간 : '08.1.1~'08.12.31	시간급	3,770 원	3,480 원	290 원 증	최 저 임금법 §10①
		일급 (8시간)	30,160 원	27,840 원	2,320 원 증	

## 2008년도 상반기 적용 건설노임 공표

지난해 9월말 기준으로 조사된 「2008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결과가 통계청의 동의를 얻어 2008. 1. 1일자로 공표 시행되고 있다.

### ■ 분야별 평균임금 현황

공 표 일 (조사기준)	전 체 직 종					
	일반공사 직 종	광 전 자 직 종	문 화 재 직 종	원 자 력 직 종	기 타 직 종	타 종
2008. 1. 1 (2007년 9월)	105,424	97,471	137,756	125,710	132,573	102,386
2007. 9. 1 (2007년 5월)	102,291	94,679	130,523	124,197	126,977	100,574
2007. 1. 1 (2006년 9월)	99,802	92,743	126,166	120,606	122,134	98,530

※일반공사직종 노임 상승률

- 직전(07년 9월)대비 2.9%, 전년동기(07년 1월)대비 5.0% 상승

### ■ 임금실태조사표 다운로드

○ 본회 인터넷 홈페이지

(www.cak.or.kr/정보센터/적산 및 기술자료/시중노임단가)

## 박경로 고문변호사 법률코너



수성구 범어2동 51-14 금강빌딩 3층  
전화 : 053) 752-3100 팩스 : 053) 752-3106

## 건설산업기본법상 처벌되는 명의대여행위

### 1. 건설산업기본법의 명의대여 금지규정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제2항에서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여 건설업자의 명의대여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건설업자에 대한 행정적 제재로서 같은 법 제83조에서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형사적 제재로서 같은 법 제96조 제4호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2. 대법원 판례의 입장

가. 대법원은 사건번호 2005도6668 판결을 비롯하여 여러 사례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가 금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란, 타인이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행세하면서 건설공사를 수급·시공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나. 반면에 “어떤 건설업자의 명의로 하도급된 건설공사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 맡아서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설업자 자신이 그 건설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또 그 시공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대여로 볼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 3. 구체적 판단기준

결국 명의대여행위해당여부는 ▶명의자인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수급과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 ▶건설공사의 수급·시공의 경위와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여부, 대가의 내용 및 수수 방법 ▶시공과 관련된 건설업자와 시공자간의 약정한 내용 ▶시공과정에서 건설업자가 관여하였는지 여부, 관여하였던 그 정도와 범위 ▶공사자금의 조달·관리 및 기성금의 수령 방법 ▶시공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 여하 등, 드러난 여러 사실관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4. 결 어

비록 명의대여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아 건설업등록이 말소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서는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도록 하는 일괄하도급금지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에 근거한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의 위험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할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해동안 제가 협회지에 기고한 글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회원사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뜻하는 일이 원만히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 건자재 가격 및 수급동향

2007. 12월말 현재

VAT별도

구분	규격	전월가격	금월가격	수급동향	비고	
철근	보통철근	D10mm	593,000	626,000	각계장사의 재고 부족으로 가격 강세이며 수급에 애로를 겪고 있음	0 단위: M/T 0 현장도착도
		D13mm	583,000	616,000		
		D16mm	580,000	613,000		
	고강력 철근	D10mm	598,000	631,000		
		D13mm	588,000	621,000		
	D16mm	585,000	618,000			
시멘트	보통시멘트 40kg	3,300	3,300	시멘트수급은 원활하지만 모래폼커로	0 단위: 포 0 대리점-수요자 직거래	
	백색시멘트 40kg	9,000	9,000			
레이콘	#57(25-240-15)	45,300	47,200	레이콘 수급은 막대한 차질 빚고 있음	0 단위: m' 0 현장도착도	
	#467(40-240-15)	44,400	46,250			
H형강	100X100X6X8mm	710,000	710,000	철근동향과 유사함	0 단위: M/T 0 현장도착도	
	300X300X10X15mm	710,000	710,000			
	400X400X13X21mm	769,000	769,000			
시멘트 벽돌	㉔190X90X57mm	42	42	수급원활 가격보합	0 단위: 개 0 현장도착도	
모래	하천모래	16,000	20,000	하천모래 채취에 대한 환경성 영향평가로 수급에 막대한 지장조래 중이며 가격 초강세	0 단위: m' 0 시내도착도	
자갈	자연 자갈	#57 25mm	13,000			13,000
		잡석	12,000			12,000
	쇄석	#467 40mm	9,000			9,000
		#57 25mm	13,000			13,000
목재 (라왕)	각재	1.8~3.6X 9~12X4.5	900	900	수급원활	0 단위: 才 0 현장도착도
	판재	1.8~3.6X30 X3~3.6	1,000	1,000		

### 회 원 현 황

■ 회원수 : 161개사

구분	토건	건축	토목	조경	금월계	전월대비
계	90	61	8	2	161	△1

※ 감소1 : 신규1, 등록말소2

■ 신입회원

상 호	업종 및 등번	대 표 자	입회일자	전화번호
(주)우남종합건설	건축 030414	이 회 중	07.12.26	384-0411

■ 제증명 발급 실적

단위 : 건수

구분	변경신고	신인도관련서류	제증명발급	PQ서류발급	기타민원류	계
금월 (2007.12.01~12.31)	9	11	19	35		74
누계 (2007.03.01~12.31)	82	350	342	565		1,339

■ 등록사항 변경신고 현황

변경사항	회 원 사 명	변 경 전	변 경 후	전화번호
대표자	영남건설(주)	박 승 철	임 승 남	752-6001
상 호 소재지	(주)성건종합건설	(주)한성건설 수성구 지산동 888	(주)성건종합건설 동구 방촌동 857-40	764-8674
소재지	녹산종합건설(주)	달서구 송현동 2015-6	남구 대명동 210-2	652-0606



#### 2007년도 건설공사실적신고 접수 안내

- 신고기간
  - 공사실적 신고(1차실적신고) : 2008. 2. 1 ~ 2.15
  - 재무제표 신고(2차실적신고) : 2008. 4. 1 ~ 4.15
- 제출서류
  - 1차 실적신고서류 : 정본철, 증명서철, 부분철, 통계청철, 자기공사철, 상호협력평가철
  - 2차 실적신고서류 : 정본철(재무제표, 기술개발비 확인서) 부분철(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협회 소정양식)

#### 2007년도 4/4분기 계약실적조사

- 각종 대외건의등 업무추진자료로 활용코자 2007년도 4/4분기 전체 회원사의 건설공사 계약실적을 아래와 같이 조사하오니 빠짐없이 회신 바랍니다.
- 조사기간 : 2007.10. 1 ~ 12.31 (4/4분기)
- 조사대상 : 신규계약 공사 및 3분기까지 조사시 제출 누락한 공사
- 제출기한 : 2008. 1.11(금)까지

#### 건설재해예방 순회교육 실시

- 주 최 : 대한건설협회노동부
- 일시 및 장소 : 1. 18(금) 14:00 시민회관 소강당
- 강 사 : 노동부 산안과장, 안전공단건설안전팀장
- 참석대상 : 회원사 임직원

#### 제1회 「건설입찰계약실무강좌」 교육과정 개설

- 교육기간 : 1. 22(화) ~ 1. 25(금) 4일간
- 장 소 : 대한건설협회 태평로회관(서울)
- 신청방법등 문의처 : (02)3485-8223

### 회 원 동 정

#### ◆ 성국산업개발(주) 공정위로부터 하도급거래 우수업체로 지정

우리사회 회원사인 성국산업개발(대표 임원근)은 지난 12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07 하도급거래 우수 및 모범업체」로 지정되어 향후 2년간 공정위의 하도급 서면실태조사가 면제되고 하도급관련 벌점도 2점 감점되는 혜택을 입게되었다. 하도급거래 우수업체는 전국에서 46개사가 지정되었는데 신청업체중에서 하도급대금을 100% 현금으로 지급하고 범위반 사실이 없을 경우 선정된다.



### 회 장 동 정

#### ❁ 2007 회원 친목행사 해단식 주재

- 일시 및 장소 : 2007.12.11(화) 18:30 사랑채식당
- 하 신 일 : 친목행사 참가자 격려 및 사진교환

#### ❁ 2007 중무식 거행

- 기간 및 장소 : 2007.12.28(금) 17:00 2층 회장실
- 하 신 일 : 협회업무 결산 및 사무처 직원 격려

#### ❁ 2008 대구경북 신년교례회 참석

- 일시 및 장소 : 2008. 1. 2(수) 12:00 인터볼고호텔

토요일에는 각종 증명을 인터넷으로 발급 받으시다